#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55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 박홍근 • 권향엽 • 김영배

김원이 · 김태년 · 문금주

박정현 · 송재봉 · 오세희

윤종군 • 윤후덕 • 이광희

이수진 • 정을호 • 채현일

최민희 • 한정애 의원

(17인)

### 제안이유

헌법은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도록 하고 있음.

정당의 활동은 결국 정당의 당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당원의 활동 또한 민주적 기본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당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가장 크고 당의 핵심 주도세력이라 할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정당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에 해당 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그 중대한 반헌법적 활동에 대하여 소속 정당 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음.

이에, 당원인 대통령의 내란·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당의 헌법수호 의무와 의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 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 나.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활동에 대한 제한

- 제43조의2(정당해산심판 청구) 정부는 당원인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 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국회의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 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되었을 때
  - 2.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때
- 제43조의3(후보자추천 제한) ① 당원인 대통령이 제43조의2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이후 제일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 ② 동일한 당원인 대통령이 제43조의2 각 호에 모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먼저 후보자 추천을 제한받는 하나의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 제43조의4(당원인 대통령의 당적 이탈) 제43조의2에 따른 정당해산심 판 청구 및 제43조의3에 따른 후보자추천 제한은 당원인 대통령이 탄핵결정 또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6장의2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
	배되는 정당활동에 대한 제한
<u>&lt;신 설&gt;</u>	제43조의2(정당해산심판 청구) 정
	부는 당원인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
	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
	을 청구하여야 한다.
	<u>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u>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헌법이나 법
	률을 위반하여 국회의 탄핵소
	추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으로 파면되었을 때
	<u>2. 「형법」 제2편제1장(내란</u>
	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
	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이 확
	<u>정된 때</u>
<u>&lt;신 설&gt;</u>	제43조의3(후보자추천 제한) ①
	당원인 대통령이 제4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② 동일한 당원인 대통령이 제 43조의2 각 호에 모두 해당하 게 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의 소속 정당은 먼 저 후보자 추천을 제한받는 하 나의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 할 수 없다.

제43조의4(당원인 대통령의 당적 이탈) 제43조의2에 따른 정당 해산심판 청구 및 제43조의3에 따른 후보자추천 제한은 당원 인 대통령이 탄핵결정 또는 형 이 확정되기 전에 당적을 이탈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